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798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영, 문현철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3. 11. 1. 원고에게 차용금은 140,000,000원, 이자는 연 29%, 변제기는 2014.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2016. 11. 21. 소외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1. 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2018.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95,000,000원,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9. 6. 소외 C,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110833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 “1. C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C과 D 사이의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D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5. 이 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9. 11.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채권최고액 95,000,000원을 배당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는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D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9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D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8개월 전인 2018. 1.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D는 원고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1, 2, 제4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별지